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10.10.14 (목 14:00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
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
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윤성옥 의원(찬성자 7인)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0년 9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8일

3. 제안 이유

- 농촌 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4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운용중인 조례안의 일부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